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. 8. 19 선고 2021가단2276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

담당변호사 서경원

피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산우

담당변호사 정치화

변론 종결2022. 7. 8.

판결 선고2022. 8. 1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77,283,8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7.경부터 2014.경까지 C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와,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.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.

1	D	E은행	2007-04-12	235,000,000	199,750,000	2016-10-14	2007-04-17	기업용장치전대출
2	F	G은행	2009-02-02	300,000,000	285,000,000	2016-09-26	2009-02-03	기임순전일반지금대
3	H	기업은행	2014-11-21	240,000,000	192,000,000	2016-11-21	2014-11-21	중소기업자금대출

나. 소외 회사는 2016. 10. 6.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는 2016. 11. 3. 중소기업은행에 180,870,349원을, 2016. 11. 4. E은행에 145,363,136원을, 2016. 11. 10. G은행에 244,547,403원을 각 변제하였다. 원고는 위 변제에 따라 2021. 6. 22. 기준 B에 대하여 총 811,875,698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B과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의 딸인 I의 계좌에서 2016. 8.경부터 2019. 9.경까지 피고의 계좌로 총 20,760,000원이 송금되었고, 주식회사 J 및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K(이하 회사 명칭으로만 지칭한다)로부터 2016. 6.경부터 2016. 8.경까지 피고의 위 계좌로 총 72,123,830원이 송금되었는바 이는 B이 무자력 상태에서 딸인 I의 계좌를 거쳐 또는 위 각 법인들을 통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. B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와 같이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 각 일시에 해당 돈을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

원고에게 증여액 합계 77,283,830원¹⁾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I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아래 표1과 같이 총 20,760,000원이 송금된 사실, J 및 K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아래 표2와 같이 총 72,123,83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나 J 및 K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B이 이를 I나 위 회사들을 통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〈표1〉

①	2016-08-09	7,800,000	(계좌번호 1 생략)
②	2016-09-01	5,260,000	
③	2016-09-13	5,000,000	(계좌번호 2 생략)
④	2016-09-14	2,000,000	
⑤	2016-09-30	500,000	(계좌번호 3 생략)
⑥	2016-09-30	200,000	
합계	20,760,000		

〈표2〉

①	2016-06-30	J	864,360
②	2016-06-30	K	2,285,110
③	2016-07-05	J	3,920,580
④	2016-07-08		6,534,300
⑤	2016-07-12		11,761,740
⑥	2016-07-13		3,920,580
⑦	2016-07-13		7,841,160
⑧	2016-07-21	K	23,523,480
⑨	2016-07-25		2,632,600
⑩	2016-07-25		921,720
⑪	2016-08-30		7,918,200

①	2016-06-30	J	864,360
합계	72,123,830		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이회경

별지

1) 송금액보다 증여액을 적게 특정한 것은 원고가 2022. 5. 12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6쪽 각주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일부 송금액 중 송금 당일이나 그 다음날 다시 J이나 K에 출금된 돈을 증여액에서 제외한 결과이다.